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선주연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jysun@keri.org

이승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srlee@kiep.go.kr

박혜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hrpark@kiep.go.kr

엄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다자통상팀 연구원
jheom@kiep.go.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보고서는 무역구제제도 중에서 반덤핑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구제의 운영 및 수출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임.
 -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양 산업 혹은 취약 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는 추세임.
 -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사를 하는 국가인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다른 국가에서 반덤핑조사를 받고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함.
 -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무역구제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함께 무역구제제도 운영상의 중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무역구제제도는 협의의 개념으로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를 의미하고, 광의의 개념으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까지 포함하지만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우리나라가 조사하고 조치를 부과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본 보고서에서는 반덤핑제도로 연구 범위를 제한함.
-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반덤핑조치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외에 주요국인 미국, 중국, 인도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부과하는 반덤핑조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반덤핑조치 효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미국의 사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외에도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치 통계와 제도에 대한 자료를 구축·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함.
- 우리나라의 對세계 반덤핑조사 현황과 미국, 중국, 인도의 한국산 수출품목에 대한 반덤핑조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품목 구성, 평균 조사기간, 피조사국 구성 등에서 국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조사 현황과 비교했을 때, 중국과 인도의 경우 HS 품목 기준 단일 품목을 대상으로 반덤핑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개시부터 종결되기까지 더 오랜 조사기간이 소요됨.
 - 특히 한국산 품목에 대한 인도의 반덤핑조사 중 단기종결 건의 평균 조사기간은 12개월로, 중국 평균 13개월과 비슷하며, 미국 평균 4개월, 우리나라 평균 5.3개월에 비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장기종결 조사건의 경우에도 미국과 우리나라는 조사기간이 중국, 인도보다 비교적 짧으며 인도와 중국의 한국산 품목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장기종결 비중이 각각 85%, 79%에 이를 정도로 매우

-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일단 반덤핑조사가 시작되면 단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주요국들의 반덤핑제도를 조사한 결과 미국은 반덤핑조사가 최종조치로 이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시장경제국 조항 및 피해의 누적평가 관련 조항이 가장 구체적임.
- 중국의 가격약속제도는 엄격히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제심제도는 환급기한 및 환급관련 증명 부담 등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 주요 쟁점을 미국, 중국, 인도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구체성은 미국에 견줄만하고, 중국이나 인도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나타남.

2. 조사 및 분석 결과

● 반덤핑조치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위협효과 존재 여부 및 조치 단계별 영향 실증 분석

-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분석자료는 한국무역위원회(KTC)와 Bown(2014)¹⁾이 구축한 World Bank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며 반덤핑조사와 조치로 인한 위협효과 발생 여부 및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산업별로 분석함.
- 반덤핑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혹은 1년 전후의 수출입액 자료를 통해 수출입증가율의 증감을 비교하여 위협효과 존재 여부와 조치 단계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반덤핑조사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반덤핑조치를 사용하는 국가의 제도적 특성, 관행, 대상 산업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반덤핑조사 및 조치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반덤핑 조사개시만으로도 피조사국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위협효과가 존재함.
 -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는 모든 산업에 걸쳐 공통적으로 대상 품목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제1차 금속 및 금속기기 산업은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며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하여 조사건수는 적지만 조사건당 수입액 규모가 크고 피조사국 수입액 감소효과가 매우 큼.
- 화학제품 산업의 경우 조사개시로 인한 위협효과는 뚜렷하지만 수입 감소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제3국으로 수입전환 효과가 발생하여 총수입은 증가하였음.
 -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조사는 단기종결된 사례와 장기종결된 사례에서 모두 위협효과가 발생하였으며 효과의 지속 정도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화학제품과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의 경우 반덤핑조사 개시 2년 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는 수출 감소세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남.

1) Bown, Chad P(2014), "Global Antidumping Database." The World Bank.

- 제1차 금속산업의 경우 조사건수 및 패소율이 높고,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되고 있음.
 -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 조사는 화학제품 산업에 집중되었고, 위협효과가 발생하였지만 그 효과는 단기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됨.
- 화학제품 산업은 반덤핑관세 부과에 의해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도 조사개시 이후 수출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조사개시 후 4년 차에는 수출액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함.
 - 인도의 對한국 반덤핑조사도 전체적으로 위협효과를 발생시키지만 그 효과는 단기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조사 중에서 화학제품 산업이 최종 반덤핑조치 부과로 종결된 비중이 85.7%를 상회할 정도로 화학제품 산업에 반덤핑조사가 집중되어 있으며 패소율이 매우 높음.

3. 정책 제언

- 반덤핑조사 빈도 및 구제율, 수출입액 비중, 수출입 증가율 등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국가별·산업별 대응전략을 제시함.

가.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반덤핑조치

- 제1차 금속 및 금속기기 산업은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며,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하여 피조사국 수입액 감소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며 국내 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화학제품 산업의 경우 반덤핑조치로 인한 수입 감소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제3국으로 수입전환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무조건적인 조사보다는 전략적 활용 측면이 강조됨.

나.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조치

- 화학제품과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은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반덤핑조사가 최종 긍정관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및 기업의 대응이 필요.
- 제1차 금속산업의 경우 반덤핑조치가 수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오래 지속되어 사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임.

다.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조치

- 화학제품과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은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액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봤을 때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과 함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
- 제1차 금속 제품산업에서 조사위협 효과보다는 반덤핑관세 부과에 의한 수출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결과는 조사과정에서 반덤핑관세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차선택으로 반덤핑관세의 크기를 낮추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라. 인도의 對한국 반덤핑조치

- 화학제품 산업은 패소율이 높아 사전에 업계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처가 요구되며 제1차 금속 산업의 경우 수출규모와 비중의 급증으로 인하여 향후 반덤핑제소로 이어질 수 있는바,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적인 수출규모 조정도 필요함.